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 시상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헌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상의 명칭)

본 상의 명칭은 "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(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)"이라 한다.

제 3 조 (설립 취지)

본 상의 시상은 비뇨의학회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분을 선정하여 노고에 감사드림과 함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표를 정함에 있다.

제 4 조 (수상 자격)

만 65세 이상의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(또는 원로회원)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후학들의 귀감과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으로 한다.

제 5 조 (후보자 추천)

수상 후보자 추천은 비뇨의학과 수련병원과장, 학회 평의원, 또는 역대 공로상 수상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, 시상 4주전까지 추천을 받는다.

제 6 조 (구비 서류)

추천인은 공헌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(해당업적의 요약 포함)
2. 이력서 (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)
3. 학회, 의학 및 의료단체, 정부기관 및 보건관련단체, 학술단체 활동경력과 수상경력 등의 서류
4. 기타 관련 서류
5. 3항의 입증 서류

제 7 조 (심사위원회)

1.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심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추천한 3명,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.
3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회장이 선임한다.

제 8 조 (심사)

1. 추천된 후보자의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 등을 평가하여 본 상의 설립취지에 맞게 심사한다.
2.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심사위원회는 1명의 후보를 선정하고,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.

제 9 조 (심사기준 및 배점)

공헌상 시상에 관련한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0 조 (시상)

1. 본 상은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계학술대회 때 시상한다.
2.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(순금 10돈 메달)을 수여한다.

제 11 조 (기타)

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공헌상 수상자를 "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" 등재후보자로 추천한다

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 후보자 공적심사 시행세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 후보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공적심사 영역)

공적심사는 학회 및 대외봉사, 수상실적으로 구분한다.

제 3 조 (학회 봉사)

학회 봉사는 대한비뇨의학회 활동, 세부전공학회 활동,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. 동일한 직책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,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는 3회까지 인정하여 가산한다.

① 2009년 이전 대한비뇨의학회 이사장: 10점
2010년 이후 대한비뇨의학회 회장: 10점
2009년 이전 대한비뇨의학회 회장: 4점
대한비뇨의학회 명예회장: 4점

②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, 대한비뇨의학회 ICUrology 편집장, 대한비뇨의학회 사업단장, 대한비뇨의학회 특별위원장, 대한비뇨의학재단 임원,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장,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지회장,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연구회장,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: 4점

③ 대한비뇨의학회 평의원 및 대한비뇨의학회 위원회 위원: 2점

제 4 조 (대외봉사)

대외봉사는 국제학술단체 활동, 국제학술대회 개최, 의학 및 의료단체 활동, 정부 및 보건관련단체 활동,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.

① 국제학술단체 (아시아 또는 International) 회장(또는 단체장), 사무총장
ⓐ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단체인 경우 회장(또는 단체장) 3점, 사무총장 2점
ⓑ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학술단체인 경우 회장(또는 단체장) 2점, 사무총장 1점
(단,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국제학술단체인 경우 2회까지만 인정)

② 국제학술대회 (아시아 또는 International) 회장(또는 대회장), 사무총장
ⓐ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대회인 경우 회장(또는 대회장) 3점, 사무총장 2점
ⓑ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학술대회인 경우 회장(또는 대회장) 2점, 사무총장 1점
(단,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2회까지만 인정)

③ 비뇨의학회 유관 국내 단체회장 : 2 점

④ 비뇨의학회 유관 국내 단체임원 : 1 점

단, 비뇨의학과 유관 국내단체는 최소 대한비뇨의학회와 상응하거나 그 이상 규모의 단체를 말함.

제 5 조 (수상)

수상은 대한비뇨의학회,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, 국제학회 및 국제단체수상(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및 세부전공 2개 이하 분야만 다루는 국제학술대회)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. 발표자 및 책임저자에 한함. (발표자와 책임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1회 점수만 적용). 국제단체수상의 경우 단체장 1인에 한함.

①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상 1점 (3회까지 적용)

②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 학술상 0.5점 (3회까지 적용)
③ 국제학술대회 중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대회 학술상 및 국제단체수상 1점 (3회까지 적용)
④ 국제학술대회 중 세부전공 2개 이하 분야만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학술상 및 국제단체수상 0.5 (3회까지 적용)

제 6 조 (심사위원회 평점)

기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5점까지 평가

제 7 조 (준용)

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업적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8년 8월부터 시행한다.